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6 선고 2022가단51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마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장호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1. 4.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1. 4. 8. 접수 제6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A마을 40가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C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평창군으로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에 따른 혁신역량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10~2011년경 합계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이장이었던 C은 그 중 2,500만원만 원고의 마을발전기금 관리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4억7,500만원은 일부 주민들과 공모하여 별도로 설립한 ‘D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취득, 공장 건축, 차량과 설비 구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은 D영농조합법인 등과 연대하여 4억7,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1심 영월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147 청구인용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춘천)2020나1252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22. 1. 27.자 2021다288518 상고기각 판결, 이하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C은 선행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2021. 4.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평창등기소 2021. 4. 8. 접수 제64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가 C으로부터 가등기를 설정받은 경위를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C과 피고 사이에 진실한 채권채무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에 근거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보조금 4억7,500만원은 D영농조합법인의 토지 매입, 공장 건물 신축, 공장 설비, 차량 구입 등 영업자산을 취득형성하는 데 이용되었으므로,

D영농조합법인의 모든 영업자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면 D영농조합법원과 C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D영농조합법인이 자신의 영업자산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인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영월지원 2022가단11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인수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D영농조합법인과 C의 원고에 대한 연대채무(이 사건 원고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C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D영농조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4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공장 건물과 설비는 구입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가상각되어 잔존가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채무자의 대물변제 제안을 수락할 법적 의무가 없고, 원고가 D영농조합법인의 영업자산이 원고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아 대물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련소송에서 D영농조합법인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D영농조합법인이 그와 같은 대물변제 제안을 하였다거나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C과 D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 평창군 전 1587㎡
2. 전 625㎡.
3. 전 1983㎡
4. 전 1455㎡ 끝.

